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5. 1.

교 육 부

이 매뉴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및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근거로 “감염병”에 대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이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 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제·개정 이력】

일 자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사유	담당부서
'13.3	부처명, 부서명, 연락처 등 현행화	정부조직 개편	학생건강안전과
'13.9	부처명, 부서명, 연락처 등 현행화	교육부 직제 개편	학생건강안전과
'14.4	실무매뉴얼 작성기준에 따라 내용정비/부록추가/ 부처명, 연락처 등 현행화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행화 조치 요청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770호)	학생건강안전과
'14.5.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실무매뉴얼 자체정비	학생건강안전과
'14.12.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실무매뉴얼 자체정비	학생건강안전과
'15.1.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실무매뉴얼 자체정비	학생건강정책과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2
제2절 법적 근거	2
제3절 적용 범위	3
제4절 용어의 정의	4
제5절 위기 형태	6
제6절 위기 정보	6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8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0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14
2.1.1 상황	14
2.1.2 조치사항 및 결과	14
2.1.2.1 조치목록	14
2.1.2.2 조치내용	14
제2절 주의	15
2.2.1 상황	15
2.2.2 조치사항 및 결과	15
2.2.2.1 조치목록	15
2.2.2.2 조치내용	15
제3절 경계	16
2.3.1 상황	16
2.3.2 조치사항 및 결과	16
2.3.2.1 조치목록	16

2.3.2.2 조치내용	17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7
제4절 심각	18
2.4.1 상황	18
2.4.2 조치사항 및 결과	18
2.4.2.1 조치목록	18
2.4.2.2 조치내용	19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9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상황	22
3.1.1 상황	22
3.1.2 조치사항 및 임무 · 역할	22
3.1.2.1 조치목록	22
3.1.2.2 기관별 임무 및 역할	22

부 록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25
2. 법정 감염병 현황	27
3. 감염병 세부정보	28
4. 등교중지 · 휴업 · 휴교 사유 및 근거	31
5.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33
6. 건강상식 수록 건강달력	37
7. 학교 급식 안전 포스터	38
8. 관련기관 연락처	41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 위기 발생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각 급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2절 법적 근거

가.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보건의료·감염병관리 등 관련 법령

- (1) 보건의료기본법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검역법
- (4) 의료법

다. 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법령

- (1) 학교보건법
- (2) 유아교육법
- (3) 초·중등교육법
- (4) 고등교육법

제3절 적용 범위

가. 이 실무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1)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2)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등

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설학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교에 대해 적용

제4절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주관기관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위기유형별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기관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 관리 활동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위기 경보 수준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신종·재출 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기존에 알려진 감염병이나 타인에 감염 우려가 높은 감염병

용 어	정 의
해외 유입 감염병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2차 전파	감염질환에 걸린 환자를 통해 주위 접촉자들이 추가 감염되는 경우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일정기간 격리시설에 수용,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 시키는 모든 경우를 총괄함
전염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가 타인에게 해당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경우를 총괄함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선박·항공기·차량 및 그 승객·승무원·화물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하는 일
방역물자	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총괄함

제5절 위기 형태

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국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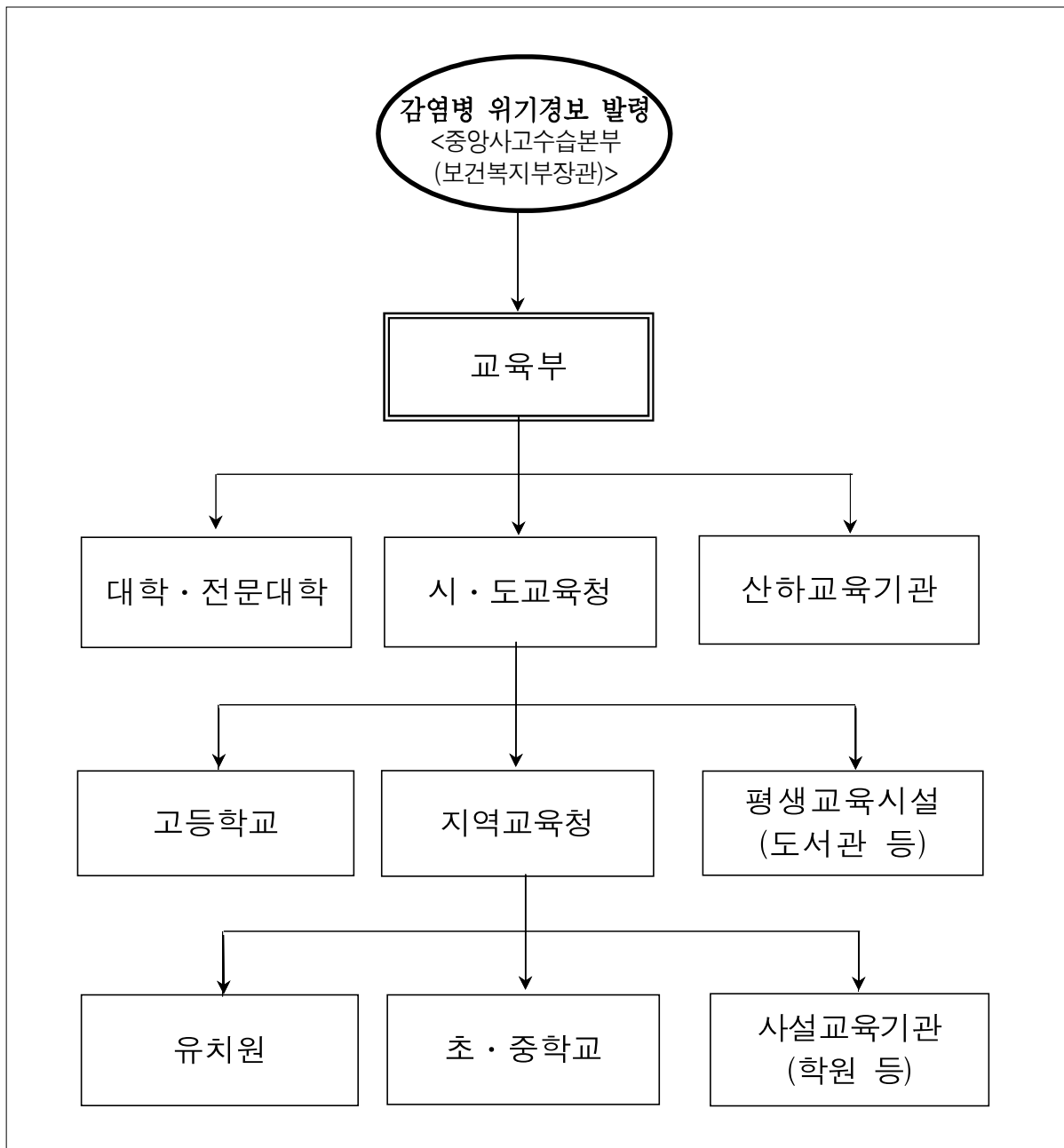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제6절 위기 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비 고
관심 (Blu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징후활동감시 대비계획점검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협조체제가동
경계 (Orang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대응체제가동
심각 (Red)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대응역량총동원

1.6.2 위기경보 전파 체계도



- ☞ 교육부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내용을 산하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 및 대학 등과 협의하여 학교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 강구/시행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7.1 대응개념

가. 목표 : 감염병의 교육기관內 발생방지 및 확산 차단

나. 대응방향

- 감염병의 교육기관內 발생 및 전파 원천 차단
- 감염자 및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및 격리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음용수, 급식 등 위생 강화
- 해외여행 자제유도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 개인위생 등 예방교육 강화

1.7.2 대응지침

가. 학생, 교직원 단체 야외활동 금지 및 예방수칙 제공,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나.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시과약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신고 유도, 방역당국과 협의 환자격리, 등교금지 등 필요조치 강구

다. 교육시설 및 환자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에 대한 소독 실시, 음용수, 학교급식 위생 강화 및 제공중단 등 단계별 대응

라.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및 예방수칙 제공, 학생, 교직원의 단체 야외활동 금지

마.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시과약 및 신고 유도,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환자격리, 등교중지 등 필요조치 강구

바. 환자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 및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 음용수, 학교급식 위생 강화 및 제공 중단 등 단계별 대응

사. 감염병이 유행하는 유행국가에서 귀국하는 학생의 경우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격리조치(잠복기간 고려) 후 전염력이 상실된 안전한 경우만 교육기관에 합류

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와 연계 강화 및 협조당부

1.7.3 판단/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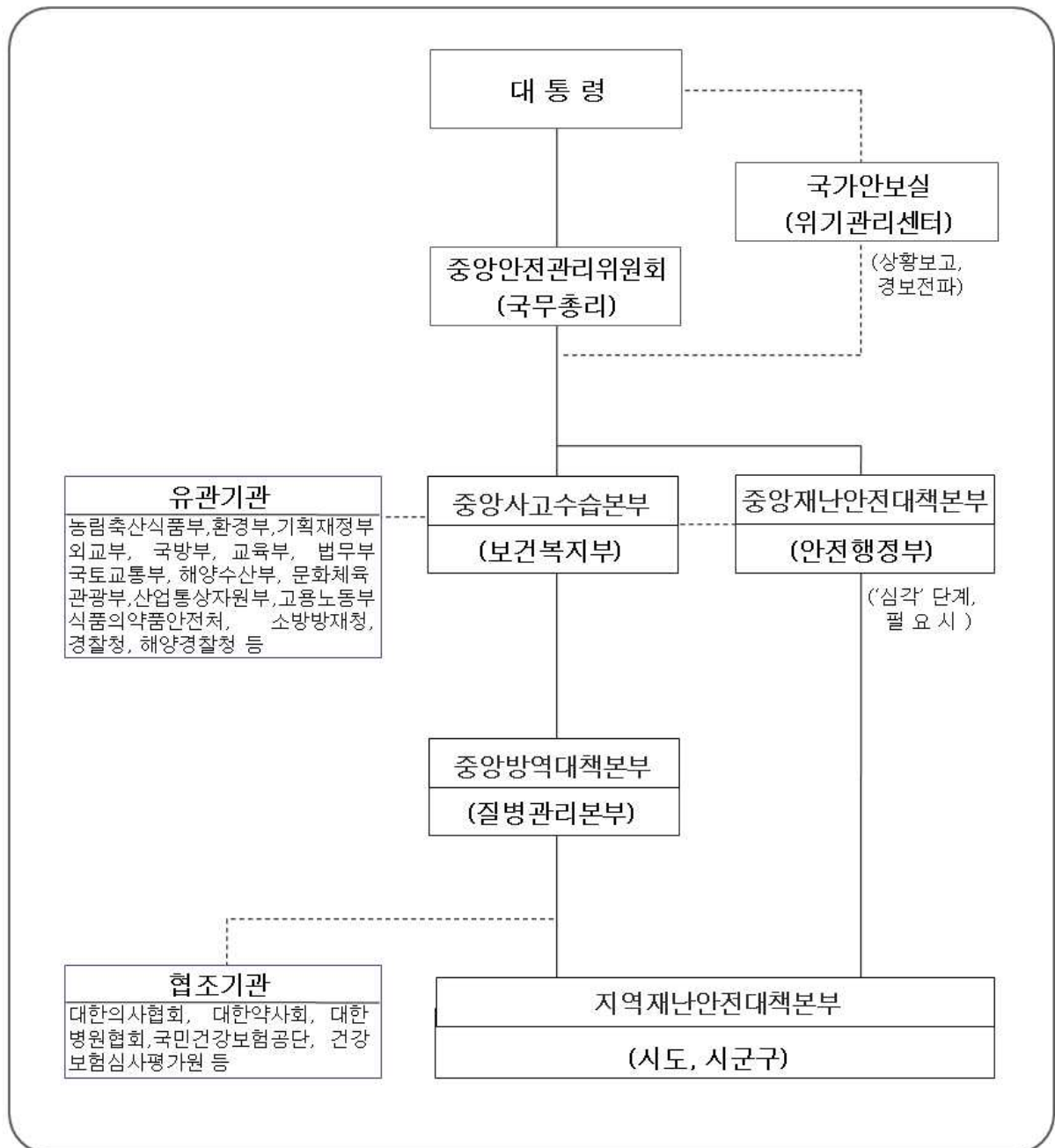
가. 감염병 증상, 잠복기, 확산 추세, 유관기관 대응 태세

- 발생지, 발생장소, 규모, 주요증상, 감염경로, 잠복기간, 예방 수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계별 대응
- 유관기관의 준비 및 대응태세, 협력체계 등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8.1. 정부 대응체계와 기구의 임무·역할

가. 정부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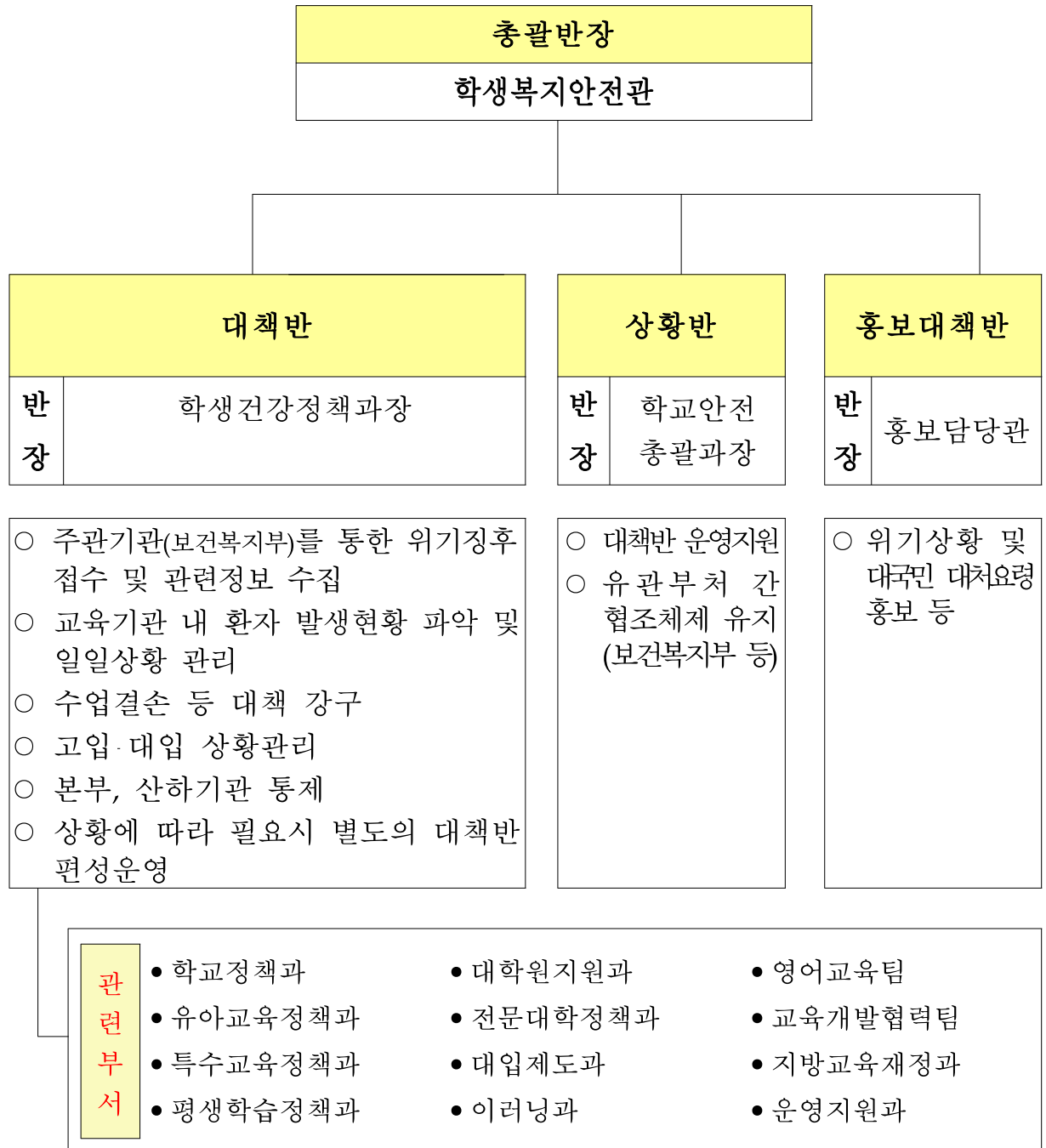


나. 기구의 임무 · 역할

구 분	역 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대책회의 등 운영 ○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상황 수습을 위한 인프라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대응지침 마련 등 기본감염병관리대응대책 수립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시·도·시·군·구 검역소 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지시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상황전파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사고 상황 파악 및 대응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방역대응 인프라 협조·지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위기정보·상황 관리 ○ 유형별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사전 협의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1.8.2. 우리부 대응체계

가. “대책반” 설치·운영(심각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설치·운영에 맞추어 교육부 대책반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대책반 인원 및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제 2 장 위기경보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

2.1.1. 상황

가.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인접국가에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원인불명의 감염질환의 발생 및 국내 유입징후가 있는 상황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책임부서)
(가) 위기징후식별	(가-1) 주관기관(보건복지부)를 통한 위기징후 접수 및 관련정보 수집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관련부서·교육기관 등 상황전파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다) 조 치	(다-1)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2.1.2.2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파 받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련부서 및 교육청에 전파

대응조치

☐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청·대학·산하기관 등에서 대응 태세를 점검하도록 조치

제2절 주 의

2.2.1. 상황

가.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인접 국가를 통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및 원인불명의 감염질환의 국내 유입·발생 및 재출현 감염병 국내 발생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책임부서)
(가) 위기징후식별	(가-1) 주관기관(보건복지부)를 통한 위기징후 접수 및 관련정보 수집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관련부서·교육기관등 상황전파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다) 조 치	(다-1)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 (다-2)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2.2.2.2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파 받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련부서 및 교육기관에 전파

대응조치

☐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청·대학·산하기관 등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조치

☐ 학생 및 소속 교직원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제3절 경 계

2.3.1. 상황

가. 국내 발생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상황

※ 상황 작성양식(예시)

☐ 개요 ○ 20**년 **월 **일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의 아버지가 발열, 급성호흡기부전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확인
☐ 세부내용 ○ 학교명 : A초등학교(○○시·군·구 ◇◇읍·면·동 소재) ○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연락처) : ○ 조치사항 : 해당 학생(형제·자매) 소속 학급 학생대상 유증상 확인 등 발생현황 점검
☐ 기타 ○ 언론보도 사항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책임부서)
(가) 위기징후식별	(가-1) 주관기관(보건복지부)를 통한 위기징후 접수 및 관련정보 수집 (가-2) 환자발생현황 파악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관련부서·교육청 등 상황전파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다) 조 치	(다-1)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휴업·휴교 포함) (다-2)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2.3.2.2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파 받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련부서 및 교육청에 전파

대응조치

- ☐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학생 및 소속 교직원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교육기관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담당부서	임무 및 역할	비 고(연락처)
학생건강정책과	○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휴업·휴교기준 마련 검토 ○ 초·중등학교 대응태세 점검 ○ 초·중등학교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548
유아교육과	○ 유치원대응태세 점검 ○ 유치원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667
특수교육정책	○ 특수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 특수교육기관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561
대학원지원과	○ 대학 대응태세 점검 ○ 대학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288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 대응태세 점검 ○ 전문대학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45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 등 대응태세 점검 ○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 044-203-6386

제4절 심 각

2.4.1. 상황

가. 국내 발생 또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 상황 작성양식(예시)

☐ 개요

- 20**년 **월 **일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의 아버지가 발열, 급성호흡기부전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확인

☐ 세부내용

- 학교명 : A초등학교(○○시·군·구 ◇◇읍·면·동 소재)
-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연락처) :
- 조치사항 : 해당 학생(형제·자매) 소속 학급 학생대상 유증상 확인 등 발생현황 점검

☐ 기타

- 언론보도 사항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책임부서)
(가) 위기징후식별	(가-1) 주관기관(보건복지부)를 통한 위기징후 접수 및 관련정보 수집 (가-2) 환자발생현황 파악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나) 보고 및 전파	(나-1) 발생현황 보고 (나-2) 관련부서·교육청 등 상통전파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다) 조 치	(다-1)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지원	○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책임부서)
	(다-2)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휴업·휴교 포함) (다-3)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2.4.2.2 조치내용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파 받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련부서 및 교육청에 전파
- ☐ 교육기관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을 통한 위기상황 전파

대응조치

- ☐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달
- ☐ 학생 및 소속 교직원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 “심각” 단계 격상 시 교육부 대책반 운영
- ☐ 수업결손 대책 마련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담당부서	임무 및 역할	비 고(연락처)
학생건강정책과	○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휴업·휴교기준 마련 ○ 초·중등학교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548
학교안전총괄과	○ 대책반 설치·운영지원 ○ 유관기관(비상담당관)과 협조 체계 유지	○ 044-203-6893
학교정책과	○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 학생 출결관리 ○ 고입상황 관리 ○ 휴업·휴교기준 마련 지원	○ 044-203-6447

담당부서	임무 및 역할	비 고(연락처)
유아교육과	○ 유치원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667
특수교육정책	○ 특수교육기관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56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974
대학원지원과	○ 대학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288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 내 환자발생 현황 파악 및 일일상황 점검	○ 044-203-6458
대입제도과	○ 대입상황 관리	○ 044-203-6366
이러닝과	○ 등교중지 학생 등에 대한 원격교육 지원	○ 044-203-6426
영어교육팀	○ 원어민 교사 관리	○ 044-203-6169
교육개발협력팀	○ 외국인 유학생 관리	○ 044-203-6767
지방교육재정과	○ 예방 및 치료약 관련 예산확보 ○ 시·도예비비 재원검토 등	○ 044-203-6815
운영지원과	○ 본부, 산하 기관 통제 ○ 기타 지원임무	○ 044-203-6129
홍보담당관	○ 위기상황 및 대국민 대처요령 홍보 등	○ 044-203-6588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상 황

3.1.1 상황

가.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3.1.2 조치사항 및 임무·역할

3.1.2.1 조치 사항

- 기관별 위기경보 접수·보고 및 신속 전파
-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기관별 대책반/상황반 활동개시
-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 하에 확산 방지활동 지원
- 환자 및 보균자, 유증상자 규모·추세 파악 대책마련
- 환경위생/개인위생 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

3.1.2.2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교육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시달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교육청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학교 등 교육시설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구 분	내 용	비 고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 정밀진단 실시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관리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금지	

※ 유치원, 대학, 도서관, 사설학원 등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부 및 세부내용을 조정 대처

부

부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감염병 예방은 ..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 이외 요리시, 설거지시, 손을 씻거나 양치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는 ..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요령 ..



2. 법정 감염병 현황

구 분	법정감염병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
특성	물/식품 매개, 유행 즉시 방역대책 (6종)	예방 접종 대 상 (10종)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19종)	신규 발생, 해외 유입 가능 (17종)	기생충 감염 (6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17종)
질 환	• 콜레라¹⁾ • 장티푸스¹⁾ • 파라티푸스¹⁾ • 세균성이질¹⁾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¹⁾ • A형 간염¹⁾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¹⁾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 간염 • 일본뇌염 • 수두	• 말라리아 • 결핵¹⁾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 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찻찻가무시증 • 랩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²⁾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C형 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의료 기관 신고 주기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예외:인플루엔자는 7일 이내)	지체 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학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감염병이다.

2) 제4군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등으로 새롭게 출현할 인플루엔자를 말하며, 2009년 출현하여 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는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에 해당한다.

3. 감염병 세부정보

가. 호흡기 감염병

질 병	전과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역 학 (호발시기, 연령)	임상 증상	비 고
			등교중지 기간			
수 두	비말 에어로졸	10~21일 (14~16일)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5~6월/11~1월 4~6세/15세미만	발열, 피로감, 피부발진, 수포	p.60
유행성 이하선염	비말	7~23일 (14~18일)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모두 가라앉았을 때까지 또는 증상발현 후 9일까지 증상발현 후 9일까지	5~7월 6~17세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p.61
홍 역	비말 에어로졸	7~18일 (평균10~12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봄철 5~10세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p.62
풍 진	비말 태반	12~23일 (16~18일)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초봄/늦겨울 젊은 성인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각이상	p.63
인플루엔자	비말	1~5일 (2일)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 까지 등교중지는 의미 없음	봄/겨울 전 연령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p.64
디프테리아	비말	2~6일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14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인두 혹은 비강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 이상 음성일 때 까지	봄/겨울 전 연령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p.65
백 일 해	비말	7~20일 (5~10일)	카타르기에 가장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봄/가을 4개월 미만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p.66
뇌수막염	비말	2~10일 (3~4일)	바이러스 : 5~7일 세균 :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24~48시간까지 뇌수막염 학생은 입원치료	바이러스 : 여름, 4~14세 세균 : 연중	발열, 두통, 구토, 의식저하	p.67
수족구병	비말 수포액	3~7일	발병 후 7일, 피부 병변에 액체가 남아있는 동안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여름 영유아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p.68
조 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	3~10일 (7일)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 까지 모두 회복될 때 까지	가을철 전 연령	인플루엔자와 동일 역학적 연관성 있음	p.69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비말	2~10일 (4~6일)	증상이 있는 동안 모두 회복될 때 까지	연중 전 연령	급성호흡기 증상 역학적 연관성 있음	p.70
결 핵	비말 에어로졸	수주~수개 월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연중 전 연령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p.71

나.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역 학 (호발시기, 연령)	임상 증상	비 고
			등교중지 기간			
세균성이질	직접/간접적 대변-경구 전파	12~96시간 (평균 1~3일)	발병 후 4주 이내	연 중 0~4세/60세 이상	발열, 복통, 구토, 뒤무직(tenesmus)을 동반한 설사	p.74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검사서 음성일 때까지 격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분변-구강 경로	3~60일 (평균1~3주)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5~6월(장티푸스) /5,6,7,8월(파라티 푸스) 영유아, 30대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p.74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 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 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격리			
콜레라	식수 및 식품	6시간~5일 (24시간 이내)	대변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정도)	6~9월 전 연령	수양성 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저림	p.75
			항생제 치료 종료 후 48시 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 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검사 서 음성일 때 까지 격리			
장출혈성 대장균	사람 간 전파, 식수 및 식품	2~8일 (평균 4일)	발병 후 1주(최대 3주)	6~9월 호발 전 연령	복통, 수양성 설사(혈성설사가능), 발열, 구토 → 열 내림	p.76
			항생제 치료 종료 후 48시 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 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검사 서 음성일 때 까지 격리			
살모넬라 감염증	분변-구강	6~48시간, 12~36시간 (6~72시간)	감염 전기간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주	6~9월 호발 전 연령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p.77
			수일~1주			
노로바이러 스	분변-구강	24~48시간 (18~72시간)	질환의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가능	연 중 전 연령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p.80
			치료 완료시까지			

다. 안과 감염병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역학 (호발시기, 연령)	임상 증상	비 고
			등교중지 기간			
유행성 각·결막염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12시간~3일	인두로부터 2주일, 분변으로부터 3~4주간 균 배출, 발병 후 7일간 격리	연중 전 연령	충혈, 동충, 눈물, 눈곱, 수명 어린이에서는 두통, 오한, 인후통,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함.	p.82
			주요 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급성출혈성 결막염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4~48시간	발병 후 최소 4일~1주	연중 전 연령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등	p.82
			활동성 병변이 있는 동안			

라. 매개체 관련 감염병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 연령)	임상 증상	비 고
일본뇌염	Culex속의 모기	7~14일	완치될 때 까지	3~15세 이하	고열(39℃~40℃),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	p.85
신증후군 출혈열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 등	2~3주	완치될 때 까지	10~1월 전 연령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등	p.86
말라리아	말라리아 모기	약 7~39일로 다양	완치될 때 까지	전 연령	주기적인 열 발작	p.87
쯔쯔가무시증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	6~18일	완치될 때 까지	10~12월 전 연령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함	p.88
렙토스피리증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2일~4주 (평균 10일)	완치될 때 까지	가을철 전 연령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7일간 지속	p.89

4. 등교중지·휴업·휴교 사유 및 근거

☐ 등교중지

- 사 유 : 학생 및 교직원중 감염병(법정감염병 및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함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시행자 : 학교의 장

☐ 휴 업

- 사 유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업을 실시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 시행자 : 학교의 장
- 보 고 : 학교의 장은 임시휴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
- 기 타 : 임시휴업을 실시한 때에는 방학 등을 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등 220일) 준수(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

☐ 휴교(휴업)

- 사 유 :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휴업명령을 하고,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휴교를 명할 수 있음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 시행자 : 관할청(교육장 : 유·초·중학교, 교육감 : 고등학교)
- 시행의무 :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휴업명령을 준수
- 수업일수 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임시휴업을 실시한 때에는 방학 등을 조정하여 법정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등 220일) 준수
 - 단, 천재지변, 주5일 수업 등의 사유로 감독청 승인을 얻은 경우 수업일수의 10%이내 단축가능

5. 감염병 분야 위기사례

가. '08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일시	'08.4.1.~'08.5.14.
장소	전북 김제 등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피해현황	○ 33개 농장에서 발생 ○ 670개 농가 8,138천수 살처분 - 17천여명 살처분 참가
주요조치	○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 AI 인체감염예방 현장조치 - 살처분자 등 고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으로 인체감염 차단 ○ AI 인체감염 감시망 구성 - 인플루엔자 감시망, 응급실 감시망, 지역사회 폐렴감시망 등을 AI 환자감시망으로 통합 운영 ○ 인체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평가	○ AI 노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체감염 사례없이 유행 종식 ○ 신속대응반의 적극적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 전략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적 지휘체계 유지 ○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로 효율적 의사 결정 ○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으로 닭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필요성 확인 ○ 대도시, 소규모 농장, 재래시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에 어려움 ○ 환자후송, 격리조치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매뉴얼 필요성 대두

나. 대형 급식업체에 의한 대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

일시	○ '06. 6. 16~6. 23		
장소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26개 중·고교, 관공서 급식소		
피해현황	○ 수도권 지역 총 26개 학교 학생 2,922명(폭로자 30,434명)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역 할
	시·군·구	보건소	○ 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 발생 및 결과보고 취합,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및 지휘
		보건환경연구원	○ 인체검체 실험실 검사·지하수 수질검사 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 2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대응조치 ○ 상부기관 보고
		역학조사과	○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 역학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 인체검체 및 지하수 바이러스 시험(유전자형 분석 포함)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 역학조사 협조
		환경부	○ 노로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지하수 전처리
평가	○ 금번 유행이 ○○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당일, - 서울시교육청은 ○○업체가 제공하는 40개교 급식 잠정중단 ○ 식약청은 ○○업체 4개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73개교 급식중단 조치를 하고, 기업체 등 총 436개 집단급식소 납품 식자재 중 문제 식자재 공급 중단 ○ 금번 대형급식업체 관련, 감염병예방관리 조치를 함에 있어관계		

	부처간 업무중복기능이 표출되어 기관간 명확한 업무분담 및 의사소통의 상시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이 매우 취약한 곳임. 따라서 무엇보다 각급 학교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집단설사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시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감염병관리 당국에서도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단체생활을 하는 기관대상 감염병예방홍보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함
--	---

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일시	'09.4.28.~'10.4.1.
장소	국내 16개 시·도 및 해외국가
피해현황	○ '09.5.2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09.9.20일까지 15,160명의 확진환자 확인. '10.6.12일까지 총 263명의 사망자 발생
주요조치	○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 대책본부 구성 ○ 입국자 발열감시, 위험지역 입국자 및 확진환자 동승객 전화추적조사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확대운영 및 내성주·변이주 감시 ○ 환자관리 - 유행초기 국가격리병원 격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대응체계 구축 - 의약품, 장비 추가비축 및 치료 거점의료기관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및 세부지침 개발, 배포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인을 위한 실험실 진단 ○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국민홍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각종 안내문 배포, 콜센터 운영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평가	○ 국가 역량의 총체적 동원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정부의 역량 집결 - 의료단체와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협조체계

	○ 장기간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조치의 산물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06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국가격리병상 확보, 백신공장 건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신설 등 ○ 새로운 감염병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한 대응 - 항바이러스제 배분체계, 거점병원 지정,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등
--	--

6. 건강상식 수록 건강달력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2014년 건강달력

1학기

주의할 점	건강 실천사항
3월 감기 황사	* 일교차로 인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조심 * 외출 시 마스크 휴대
4월 황사, 꽃가루 알레르기	* 외출 시 마스크 휴대, 눈 비비지 않기
5월 수두, 볼거리 (유행성이하선염)	* 기침예절 지키기 * 외출 후 손발 씻고 양치질
6월 곤충조심	* 야외 활동시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7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등의 청결유지 * 화장실 이용 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음식은 꼭 익혀 먹기
8월 열사병	* 한 낮 뜨거운 더위는 피하고 충분한 수분섭취
9월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질병 유행시 기밀적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10월 말라리아, 일본뇌염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2학기

주의할 점	건강 실천사항
9월 유행성출혈열, 쯔쯔기무시증	* 야외 활동 시 피부노출을 주의하고 신과 등에서 하지 않기
10월 알레르기성 비염	*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
11월 환절기 감기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12월 안구건조증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 자제
1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겨울을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월 인플루엔자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3월 바이러스성 장염	*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손씻기
4월 감기, 인플루엔자	* 손을 자주 씻고 습도 유지 * 외출시 장갑, 목도리 등을 활용한 체온 유지
5월 취학아동 건강체크	* 예방접종 확인 *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관리 생활화
6월 피부건조증	* 수분을 자주 섭취

7. 학교급식 안전 포스터

행복학교 안심급식 우러나온다!



학교급식 안전수칙

- 개인위생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스트레칭 등 급식준비
- 식재료 대면 검수 및 교차오염 방지, 적온배식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세척·소독, 급식실 보안점검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발생 시 신속 보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월별 실천사항

관리 중 점	주요 실천 사항	관리 중 점	주요 실천 사항
1 거울방학 급식시설 안전관리	● 급식시설·설비 동파방지 및 안전관리 ● 방학 중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7 휴서기(폭염) 급식안전 주의	● 급식실 온·습도 관리 ● 부정·불량식품 매식금지 지도
2 개학대비 급식시설 안전점검 대청소/소독	● 방학 중 미사용 급식시설 안전점검, 대청소 및 소독 ● 산재예방 및 위험물질 보관·취급 요령 교육	8 개학대비 급식시설 안전점검 및 대청소(소독)	● 방학 중 미사용 급식시설 안전점검, 대청소 및 소독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3 신학기 식품안전 및 급식지도	●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 식품알레르기 유증상자 파악 및 관리 ● 급식종사자 및 학생 개인위생 철저	9 2학기 식품안전 및 급식지도	● 급식종사자 및 학생 개인위생 철저 ● 명절음식 등 전통 식문화 지도
4 봄철 식중독 주의	● 현장체험학습 등 야외활동 시 음식물 섭취 주의 지도 ● 비가열 섭취식품 위생관리	10 가을철 식중독 주의	● 현장체험학습 등 야외활동 시 음식물 섭취 주의 지도 ● 비가열 섭취식품 위생관리
5 어패류 위생관리	● 패류독 및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 냉·난방기, 에어컨 등 청소	11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 비가열 식재료 위생관리 ● 가열조리 식품 중심온도 확인
6 하절기(장마철) 식재료 오염주의	● 비가열 식재료 위생관리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12 급식소 근무자 안전사고 주의	● 미끄러짐 등 급식실 안전사고 주의 ● 급식기구 안전관리

8. 관련기관 연락처

가. 중앙행정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 중앙안전상황실	02)2100-1825 02)2100-322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0-5194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안전총괄과	043)719-1647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02)2100-8926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2890(야간 상황실)

나. 시·도교육청

지 역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FAX)
서 울	체 육건강과	02)3999-579	02)3999-756
부 산	평생교육체육과	051)8600-415	051)860-0459
대 구	학교생활문화과	053)231-0526	053)757-8509
인 천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139	032)420-8284
광 주	체 육복지건강과	062)380-4465	062)380-4615
대 전	평생교육체육과	042)480-7719	042)480-7722
울 산	평생교육체육과	052)210-5592	052)210-5599
세 종	인성건강과	044-320-2446	044-865-4208
경 기	체 육건강교육과	031)249-0594	031)248-2119
강 원	체 육건강과	033)258-5111	033)258-5129
충 북	체 육보건급식과	043)290-2275	043)290-2739
충 남	체 육예술건강과	041)640-7521	041)631-7964
전 북	인성건강과	063)239-3390	063)220-9411
전 남	체 육건강과	061)260-0654	061)260-0117
경 북	체 육건강과	053)603-3572	053)603-3599
경 남	체 육인성과	055)268-1396	055)268-1419
제 주	학교생활안전과	064)710-0474	064)710-0459

다.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02)2133-7687
부산광역시	보건관리과	051)888-4035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053)803-6284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43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33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270-4851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2)229-3561
경기도	보건정책과	031)8008-2421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5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2
충청남도	보건행정과	041)635-4306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3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061)286-6063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427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6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7

라.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	02)2100-182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0-519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안전총괄과	043)719-1647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02)2100-8926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

교 육 부		
연 락 처	학생건강정책과	(044) 203-6548
	FAX	(044) 203-6438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